#### 군산시 공고 제2019 - 1673호

군산시시민의날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「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9월 16일

#### 군 산 시 장

#### 군산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를 1995년 제정한 이후 개정된 사례가 없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문구와 내용 등을 일부 수정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,
-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의 개최근거와 기념행사(문화예술 및 시민체육 행사)에 소요되는 재정 지원(경비 지원 및 시상금 지급 등)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개정 : 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→ 군산시민의 날 조례
- O 조례의 목적 및 시민의 날 용어 수정 (안 제1조~안 제2조)
  - 일부 오래된 표현 및 어려운 한자어 표기 정리 및 내용 수정
  - 군산시 시민의 날 → 군산시민의 날
- O 기념행사 개최 근거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(안 제3조~안 제4조)
  -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할 수 있는 행사의 종류
  - 행사 소요 경비 및 행사 참가 입상팀 시상 근거

#### 3. 의견제출

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6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 : 행정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

- 가. 의견 제출사항
  -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)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റി	<u>o</u>	비고
그네는 네팅	찬성	반대	91	71	P1-14

-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나. 의견 제출할 곳
  - 주 소 : 우)573-703 군산시 시청로 17 (조촌동)
    - 군산시청 행정지원과(☎063-454-2234, FAX 454-2229)
  - 전자우편 : purple609@korea.kr
- 다. 의견 제출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, 직접방문 등
- 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(☎063-454-2234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군산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보

군산시시민의날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군산시시민의날조례"를 "군산시민의 날 조례"로 한다.

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산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

고취시켜,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군산시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민의 날) 군산시민의 날(이하 "시민의 날"이라 한다.)은 매년 10월 1일 로 한다.

제3조(기념행사) 군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.)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- 1. 시민의 날 기념행사
- 2. 문화·예술 행사
- 3. 시민 체육행사
- 4.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

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,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재정지원) ①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사에 참가하여 입상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상 및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	칙
1	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[별표 1] 군산시민의 날 기념 문화예술 행사 및 시민 체육행사 입상 단체 및 개인 상금 지급 기준(제4조 제2항 관련)

구 분	상금 지급 조건	상금 지급 기준
문화 예술행사	<ol> <li>문화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</li> <li>시민 체육행사에 참가하여 종목별 입상 및 종합 순위에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</li> </ol>	○ 1팀(1인)당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입상 성적별 차등 지급

#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행

#### 개 정 아

#### 군산시시민의날조례

## 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케 하며 애향심 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일자) 매년 10월 1일을 군 산시민의 날 로 한다.

제3조(축제행사) ①시민의 날 축 제3조(기념행사) 군산시장(이하 제행사는 매년 10월 1일 거행한 다. 다만, 사정이 있을 경우에 는 연기할 수 있다.

- ②시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호 <u>와</u> 같다.
- 1. 제례행사
- 2. 경축식전행사
- 3. 시민의장포상
- 4. 진포대첩제
- 5. 민속예술행사
- 6. 체육행사

#### 군산시민의 날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친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산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 고 애향심을 고취시켜, 나아가 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 고자 군산시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> 제2조(시민의 날) 군산시민의 날 (이하 "시민의 날"이라 한다.) 은 매년 10월 1일 로 한다.

"시장"이라 한다.)은 매년 시민 의 날을 기념하고 군산시민으로 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 기 위하여 시민의 날을 전후하 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- 1. 시민의 날 기념행사
- 2. 문화 · 예술 행사
- 3. 시민 체육행사
- 4.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

7. 학술행사

8. 기타 축제행사

<u><신</u>설>

제4조(재정지원) ①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에 소요되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3조 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행사에 참가하여 입상 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상 및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<u>제5조</u> ~ <u>제10조</u> (현행 제4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

<u>제4조</u> ~ <u>제9조</u> (생 략)

# **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요인

- 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(재정지원)

시 보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5항 1호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

#### 4. 작성자

작성자	군산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
연락처	(063) 454 -2220

군산시 공고 제2019 - 1685호

##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(안) 입법예고

「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 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9월 16일

## 군 산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

#### 2. 제정이유

○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 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우리시가 출자하는 출자기관 설립 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, 발전사업 추진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목적, 회사의 설립 및 명칭, 사무소, 정관 (안 제1조 ~ 제4조)
- 자본금 및 출자 등, 주요업무와 사업, 주주권 행사 (안 제5조 ~ 제7조)
- 이익금의 처리, 재정지원, 대행사업의 시행, 회계연도 (안 제8조 ~ 제11조)
- 지도감독 등, 공무원 파견 및 겸임, 다른 법령의 준용(안 제12조 ~ 제14조)

#### 4. 의견제출

○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:에너지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군산시청에너지담당관 신재생육성계(☎063-454-4412)으로 문의 또는 군산시청홈페이지(http://www.gunsan.go.kr)공고/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- 2)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나. 의견제출 장소 : 우)540-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(조촌동,군산시청) 에너지담당관(전화 : 063-454-4412 / FAX 063-452-8158)
- 다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, 군산시 홈페이지 등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합합에고사왕에 대한 의견시								
<ul> <li>□ 자치법규명 :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(안)</li> <li>○ 성 명(단체명) :</li> <li>○ 주 소 :</li> <li>○ 전 화 번 호 :</li> </ul>								
조례안 내용	의	견	비고					

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

##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『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 과 『상법』에 따라 "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"를 설립하여 산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사의 설립 및 명칭) 군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는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며, 그 명칭은 "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"(이하 "회사"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)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4조(정 관)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- 1. 목적
- 2. 상호
- 3.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
- 4. 본점 소재지
- 5. 회사의 공고 방법
- 6. 주식 및 사채에 관한 사항
- 7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- 8. 임직원에 관한 사항
- 9.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
- 10. 해산에 관한 사항
- 11. 정관의 변경
- 12. 기타 필요한 사항
- ② 회사의 정관 작성, 변경시 시와 협의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제5조(자본금 및 출자 등) ①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(증자를 포함한다.)를 할 수 있으며, 시의 출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**제6조(주요업무와 사업)** 회사의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재생에너지사업의 효율적, 단계적,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.

- 1. 새만금 부지 내 육상 수상 태양광 발전시업
- 2. 주차장 등 시 공공유휴부지 활용 발전사업
- 3. 해상풍력 발전사업
- 4. 기타 신·재생에너지발전사업 및 수익금 배분사업
- 5. 발전소의 건설,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거나 필요한 사업

- 6. 그 밖의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
- 7.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부대사업

**제7조(주주권 행사)**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.)이나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.

보

제8조(이익금의 처리) 회사의 이익금 가운데 시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시민복리증진, 지역개발,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.

제9조(재정 지원) ① 시는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있어 회사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한다.

제10조(대행사업의 시행) 회사는 국가 또는 지자체,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.

제11조(회계연도) 회사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2조(지도:감독 등) ① 시장은 회사를 감독함에 있어 『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제25조 각 항에 따라 한다.

- ② 시장은 『지방자치단체 출자・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제26조에 따라 회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·감독, 검사 결과,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3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다른 법령의 준용)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『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과 『상법』, 『지방재정법』, 『군산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』, 『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 를 준용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군산시 공고 제2019-1689호

『군산시 적극행정 운영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『행정절차법』 제41조와 『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9월 16일

## 군 산 시 장

#### 『군산시 적극행정 운영조례』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·근절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대통령령 '19.8.6.)시행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- 나.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(안 제2조)
- 다.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  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수행
- 라.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규정(안 제5조 ~ 제6조)
- 마. 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(안 제9조)

#### 3. 조 례 안 : 붙임

#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 : 기획예산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획계(☎063-454-230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입법예고사항에 관한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#### 나. 의견 제출방법 : 직접방문(서면), 팩스, 전자우편

#### 다. 의견 제출장소

- 주 소 : (54078) 군산시 시청로 17(군산시청) 5층 기획예산과

- 전 화 : 063-454-2303

- 팩 스: 063-452-8157

- 전자우편 : backbks@korea.kr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조례

O 성 명(단체명):

O 주 소:

O 전 화 번 호 : (연락이 가능한 휴대폰, 자택, 사무실 등)

조례안 내용	찬성	여부	ol		비고
조네인 대중	찬성	반대	7	신	H1 1/

군산시 조례 제 호

####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군산시장(이하 '시장'이라 한다)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-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제3조(적극행정 지원위원회)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(이하 "지원 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
  - 2.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
  -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,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민간위원은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- 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지원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.

- 제5조(위원의 신분보장)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 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4.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- 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 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 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  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  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- 제7조(간사)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.
  -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.
- 제8조(수당 등)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군산시 고시 제2019-93호

##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 고시

2019년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업무에 따른 지적도 근점 81점의 측량성과를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(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9. 9.

## 군 산 시 장

	기준점	M.	ᅨ측지계		투영	정표고		과출	표지
연번	변호	위도/경도	평면	!직각좌표(m)	원점	(m)	소재지	관측 일자	재질
	50000	35° 48' 10.17937"	Х	356323.19		4.040	옥도면	2019.04	원 TII
1	50930	126° 25' 05.26137"	Υ	147405.72	- 중부	4.648	무녀도리 136-1	.30	철 재
2	50931	35° 48' 07.52934"	Х	356242.03	- 중부	4.601	옥도면 무녀도리	2019.04	된 TII
2	50931	126° 25' 01.81389"	Υ	147318.67	- 중두	4.601	129	.30	철 재
2	F1147	35° 48′ 11.84897″	Х	356373.70		0.705	옥도면	2019.04	된 TII
3	51147	126° 25' 11.66753"	Υ	147566.87	- 중부	6.795	무녀도리 산102-4	.30	철 재
4	52550	35° 58′ 26.31384″	Х	375211.52		4.621	소룡동 산216	2019.04	원 TII
4	53559	126° 39' 24.57236"	Υ	169047.91	- 중부			.30	철 재
	50500	35° 58' 23.33870"	Х	375119.45		4.100	산북동	2019.04	된 TII
5	53560	126° 39' 28.73349"	Υ	169151.84	- 중부	4.186	3475-1	.30	철 재
6	53561	35° 58′ 17.85367″	Х	374949.83	- 중부	4.395	산북동 3470	2019.04 .30	철 재
О	53561	126° 39' 35.19837"	Υ	169313.23	_ &-	4.395	선독등 34/0		설세
7	53562	35° 58′ 14.79224″	Х	374855.27	- 중부	4.255	산북동	2019.04	철 재
1	53562	126° 39' 37.47995"	Υ	169370.06	_	4.255	1550-2	.30	설세
8	53563	35° 58′ 19.96800″	X	375016.62	- 중부	4.972	산북동	2019.04	철 재
0	33303	126° 39' 16.73801"	Y	168850.94	87	4.972	1056-54	.30	걸제
9	53564	35° 58' 15.19865"	Х	374869.14	- 중부	3.689	산북동 1668	2019.04	철 재
9	55504	126° 39' 22.19595"	Y	168987.17	87	3.009	선국공 1000	.30	걸제
10	53565	35° 58' 15.81820"	Х	374888.16	중부	4.249	산북동	2019.04	철 재
10	38363	126° 39' 23.04595"	Υ	169008.53	ਠਜ	4.249	1651-3	.30	<u> </u>
11	53566	35° 58′ 17.18008″	Х	374930.08	중부	3.644	산북동	2019.04	철 재
11	33300	126° 39' 23.65321"	Υ	169023.90	- 중구	3.044	1048-12	.30	설세

연번	기준점	세계측지계			투영 원점	정표고	소재지	관측 일자	표지 재질
선언	번호	위도/경도	평면	!직각좌표(m)	원점	(m)	소새시	일자	재질
10	50507	35° 58′ 13.27256″	Х	374809.55	L	0.705	N = 0.400	2019.04	ᅯᄑ
12	53567	126° 39' 24.69965"	Υ	169049.69	중부	3.735	산북동 3483	.30	철재
10	E2569	35° 58′ 13.13904″	Х	374805.27	중부	4 272	산북동	2019.04	철재
13	53568	126° 39' 26,51813"	Υ	169095.24	- 5-	4.272	1627-1	.30	설세
14	53569	35° 58′ 14.48963″	Х	374846.74	중부	4.872	산북동 3477	2019.04	철재
14	55569	126° 39' 28.29018"	Y	169139.78	5 +	4.072	선독등 34//	.30	
15	53570	35° 58′ 15.68189″	Х	374883.37	중부	5.000	산북동 3476	2019.04	실 절재
15	30370	126° 39' 29.72751"	Y	169175.92	8.7	3.000	248 0470	.30	르세
16	53571	35° 58′ 11.46897″	Х	374753.76	중부	3.678	산북동 3484	2019.04	철 재 철 재
10	33371	126° 39' 26.98445"	Y	169106.74	5 T	3.070	선 수 등 0404	.30	2
17	53572	35° 58′ 10.95516″	X	374737.19	중부	3.706	산북동 3476	2019.04	철재
17	33372	126° 39' 35.34281"	Y	169316.10	5 +	3.700	선국중 3470	.30	
10	E2E72	35° 58′ 12.87206″	Х	374796.44		4.000	MH = 0476	2019.04	ᅯ뀌
18	53573	126° 39' 33.36350"	Υ	169266.72	중부	4.008	산북동 3476	.30	철재
10	F2F74	35° 58′ 14.71322″	Х	374853.16		2.000	3.992 산북동 1548-1	2019.04	ᅯ피
19	53574	126° 39' 33.71564"	Υ	169275.74	중부	3.992		.30	철재
20	53575	35° 58′ 16.84871″	Х	374919.19	중부	4 506	산북동	2019.04	철자
20	53575	126° 39' 31.31888"	Υ	169215.92	- ਲਜ	4.596	3475-1	.30	설세
0.1	E2E76	35° 58′ 19.00407″	Х	374985.80		4 101	산북동 1047-15	2019.04	ᅯᅚ
21	53576	126° 39' 29.35087"	Υ	169166.84	중부	루 4.121		.30	철자
22	53619	35° 51' 25.22190"	Х	362393.00	중부	4.841	옥도면 말도리 143	2019.04	철자
22	55019	126° 19' 05.65129"	Υ	138418.45	5 +	4.041			일시
23	53620	35° 51' 15.36170"	Х	362089.43	중부	6.052	6.953 옥도면 말도리 12	2019.04	철자
23	55020	126° 19' 03,69633"	Υ	138367.27	5 +	0.955			날세
24	F2621	35° 51′ 11.90877″	Х	361980.68	, u	4 200	옥도면	2019.04	=1.70
24	53621	126° 19' 17.01997"	Υ	138700.85	중부	4.388	말도리 산34	.30	철자
25	53622	35° 51′ 16.44315″	X	362120.46	중부	13.882	옥도면	2019.04	철자
25	55022	126° 19' 16.90387"	Y	138698.91	5 +	13.002	말도리 32	.30	
26	53623	35° 51′ 20.65441″	X	362250.44	중부	37.681	옥도면	2019.04	철재
20	33023	126° 19' 15.82255"	Y	138672.68	87	37.001	말도리 19	.30	르세
27	53624	35° 51′ 18.92242″	X	362196.45	중부	26.226	옥도면	2019.04	철재
21	55024	126° 19' 19.31188"	Y	138759.86	5 +	20.220	말도리 46	.30	
28	53625	35° 51′ 16.73004″	Х	362129.00	중부	18.576	옥도면 말도리 36	2019.04	철재
۷	J0020	126° 19' 18.62230"	Y	138742.09	<b>О</b> Т	10.570	말도리 36	.30	
29	53626	35° 51' 07.80427"	Х	361838.88	중부	45.408	옥도면 말도리	2019.04	철재
	J3020 	126° 20' 46.49875"	Y	140945.24	ਰ ਜ	45.400	월도리 산115-33	.30	_ 발새 
30	52627	35° 51' 06.79738"	Х	361807.35	중부	45.584	옥도면 말도리	2019.04	=,
٥U 	53627	126° 20' 49.42591"	Υ	141018.48	まず	45.584	말도리 산115-60	.30	철 재
21	E2622	35° 51' 06.40663"	Х	361794.80	조ㅂ	24 706	옥도면	2019.04	ᅯ뀌
31 53628	53628	126° 20' 52.47936"	Y	141095.02	- 중부	34.726	옥도면 말도리 81	.30	철 재

연번	기준점 번호	세기	∥측지계	측지계		정표고	A TILTI	관측 일자	표지 재질
20		위도/경도	평면	!직각좌표(m)	_ 투영 원점	(m)	소재지	일자	재질
20	F2000	35° 51' 03.77491"	Х	361713.24	, , i	10.040	옥도면	2019.04	
32	53629	126° 20' 55.12136"	Y	141160.77	- 중부	19.640	말도리 산115-18	.30	철 재
20	F2020	35° 51' 03.77560"	Х	361712.48		~ 나 00 507 옥도	옥도면	2019.04	
33	53630	126° 20' 59.80420"	Υ	141278.28	- 중부	28.597	말도리 89-6	.30	철재
34	53631	35° 50' 57.20133"	Х	361510.71	중부	7.065	옥도면 말도리	2019.04	철재
34	55051	126° 20' 54.63704"	Y	141147.27	5 +	7.005	한115-45	.30	날세
35	53632	35° 50' 56.06343"	X	361474.91	중부	6.941	옥도면	2019.04	철재
33	30002	126° 20' 59.02975"	Y	141257.27	5.7	0.541	말도리 152	.30	2 /11
36	53633	35° 50' 58.83532"	X	361549.52	- 중부	17.285	옥도면	2019.04	철 재 철 재
30	30000	126° 22' 04.83840"	Y	142909.20	5 +	17.203	말도리 101	.30	2 1
37	53634	35° 50′ 58.78021″	X	361547.39	- 중부	19.065	옥도면	2019.04	철 자
37	30004	126° 22' 07.51841"	Y	142976.44	5 T	19.005	말도리 95	.30	2 1
38	53635	35° 50' 57.14214"	Х	361495.60	- 중부	29.369	옥도면 말도리	2019.04	철 자
00	30003	126° 22' 15.53648"	Y	143177.31	87	25.005	산129-1	.30	2 /
39	53636	35° 50' 54.67163"	Х	361420.22	_ 주브	중부 14.531	옥도면 말도리 118	2019.04	철 자
00	30000	126° 22' 10.82873"	Y	143058.69	87			.30	21
40	53637	35° 50' 53.12058"	Х	361372.55	- 중부		10 727	2019.04	철지
40	30007	126° 22' 09.96497"	Y	143036.71	87	10.727	말도리 117	.30	21
41	53638	35° 50' 54.35915"	Х	361409.00	- 중부	16.222	옥도면 말도리	2019.04	철 자
71		126° 22' 20.66414"	Y	143305.44	0 1	10.222	산129-1	.30	
42	53639	35° 50' 58.27048"	X	361529.35	- 중부	20 033	옥도면 20.033 말도리	2019.04	_ 철 자
		126° 22' 21.94222"	Y	143338.28		20.000	131-5	.30	
43	53640	35° 50′ 57.72940″	Х	361512.46	- 중부	18.832	옥도면 말도리	2019.04	_ 철 자
		126° 22' 23.25566"	Y	143371.13			산130-1	.30	
44	53641	35° 50' 55.86782"	Х	361455.01	- 중부	17.805	옥도면 말도리	2019.04	실 절 자
		126° 22' 23.70002"	Y	143381.91		17.000	산129-1	.30	
45	53642	35° 51' 00.40187"	Х	361594.61	- 중부	28.825	옥도면 말도리	2019.04	철 지
		126° 22' 24.62450"	Y	143406.01			산129-1	.30	
46	53643	35° 51' 00.61279"	Х	361600.67	- 중부	26.523	옥도면 말도리	2019.04	철 지
		126° 22' 27.39018"	Y	143475.45		·	산129-1	.30	
47	53644	35° 51' 01.91032"	Х	361639.80	- 중부	9.109	옥도면 말도리	2019.04	_ 철지
		126° 22' 32.73834"	Y	143609.91			134-1	.30	
48	53645	35° 50' 57.40624"	Х	361500.45	- 중부	6.615	옥도면	2019.04	_ 철지
		126° 22' 36.05160"	Y	143692.16			말도리 132	.30	
49	53646	35° 50′ 58.74396″	Х	361541.27	중부	5.196	옥도면 말도리	2019.04	 철자
		126° 22' 38,58507"	Y	143756.00			136-3	.30	
50	53647	35° 50′ 53.40851″	Х	361376.98	- 중부	5.779	옥도면 말도리	2019.04	_ 철 자
		126° 22' 37.65188"	Y	143731.54			산129-1	.30	
51	53648	35° 50' 52.80384"	Х	361357.80	- 중부	7.739	옥도면 말도리	2019.04	 철자
- '	200 10	126° 22' 41.05306"	Y	143816.76		1.755	산129-1	.30	

연번	기준점	세계측지계			투영 원점	정표고	소재지	관측 일자	표지 재질
25	번호	위도/경도	평면	!직각좌표(m)	원점	(m)	소세시	일자	재질
EQ.	F2640	35° 49' 41.62946"	Х	359150.65		7.064	옥도면	2019.04	취제
52	53649	126° 24' 06.93917"	Y	145958.57	중부	7.964	선유도리 151-4	.30	철재
F0	50050	35° 49' 40.70825"	Х	359122.12	- L	0.000	옥도면	2019.04	
53	53650	126° 24' 07.81415"	Y	145980.36	중부	8.300	선유도리 467	.30	철재
<b>5</b> .4	50054	35° 49' 39.64110"	Х	359089.03	- L	4.400	옥도면	2019.04	=1.70
54	53651	126° 24' 09.11492"	Y	146012.81	중부	4.189	선유도리 148-1	.30	철재
	50050	35° 49' 41.45136"	Х	359143.93	- L	10.1.10	옥도면	2019.04	
55	53652	126° 24' 14.93100"	Y	146159.14	중부	10.149	선유도리 148-13	.30	철재
50	50050	35° 49' 40.06144"	Х	359101.06	- L	4.005	옥도면	2019.04	÷1 TU
56	53653	126° 24' 15.16038"	Y	146164.63	중부	4.365	선유도리 148-1	.30	철재
F-7	50054	35° 49' 37.52216"	Х	359022.02	- L	4.700	옥도면	2019.04	
57	53654	126° 24' 20.22920"	Y	146291.39	중부	4.768	선유도리 144-2	.30	철재
	50055	35° 49' 31.05383"	Х	358818.61	- L	0.010	옥도면	2019.04	÷1 TU
58	53655	126° 24' 46.91754"	Y	146960.08	중부	6.319	선유도리 112-8	.30	철재
50	50050	35° 49' 27.03739"	Х	358694.22	- L	2.607	옥도면	2019.04	=1.70
59	53656	126° 24' 50.91074"	Y	147059.57	중부	3.607	선유도리 94-39	.30	철재
00	50057	35° 49' 29.56878"	Х	358772.10	- L	3.989	옥도면 선유도리	2019.04	÷1 TII
60	53657	126° 24' 51.88208"	Y	147084.42	중부	3.989	전유도리 102	.30	철재
0.4	50050	35° 49' 28.98024"	Х	358753.44	- L	4.504	옥도면	2019.04	÷1 TII
61	53658	126° 24' 55.31156"	Υ	147170.40	중부	4.564	선유도리 474	.30	철재
60	F20F0	35° 49' 30.32605"	Х	358794.67		4.626	옥도면 선유도리 474	2019.04	ᅯᄁ
62	53659	126° 24' 56.98789"	Y	147212.72	중부	4.636		.30	철재
60	F2000	35° 49' 27.56402"	Х	358709.60	, L	옥도면 4.005 서우드리	2019.04	ᅯᆌ	
63	53660	126° 24' 56.60009"	Υ	147202.48	중부	4.885	선유도리 473-1	.30	철재
0.4	50004	35° 49' 25.05604"	Х	358632.59	- L	5 550	옥도면	2019.04	
64	53661	126° 24' 54.66085"	Υ	147153.34	중부	5.550	선유도리 86	.30	철재
65	F2000	35° 49′ 24.73602″	Х	358621.88		0.410	옥도면	2019.04	ᅯᅰ
65	53662	126° 25' 00.27409"	Υ	147294.18	중부	6.410	선유도리 75	.30	철재
00	F2000	35° 49' 23.80145"	Х	358592.52	, L	4.001	옥도면	2019.04	
66	53663	126° 25' 04.05758"	Υ	147388.98	중부	4.621	선유도리 74	.30	철재
67	53664	35° 49' 22.19643"	Х	358542.20	중부	2 171	옥도면	2019.04	철재
07	53004	126° 25' 09.73675"	Υ	147531.25	- 5-	3.171	선유도리 산30-1	.30	설세
68	53665	35° 49' 21.59091"	Х	358524.20	중부	5 920	옥도면	2019.04	철재
UO		126° 25' 05.29178"	Υ	147419.56	あ デ	5.829	선유도리 64	.30	설 새 
60	F2666	35° 49' 15.51582"	Х	358336.49	조ㅂ	F 401	옥도면	2019.04	ᅯᄁ
69	53666	126° 25' 08.43621"	Υ	147497.38	중부	5.401	선유도리 48	.30	철재
70	F2007	35° 49' 15.18225"	Х	358325.98	χн	7 710	옥도면	2019.04	원판
70	53667	126° 25' 09.93636"	Y	147534.98	중부	7.716	선유도리 24	.30	철 재
74	E2000	35° 49' 13.64841"	Х	358278.24	χ.	10.700	옥도면	2019.04	<b>デルアリ</b>
71 53668	126° 25' 13.08235"	Y	147613.67	- 중부	13.729	선유도리 산26	2019.04	철 재	

연변	기준점	세기	측지계		투영	정표고 (m)	소재지	관측 일자	표지			
25	번호	위도/경도	평면	!직각좌표(m)	투영 원점			일자	표지 재질			
72	53669	35° 49' 11.88272"	Х	358223.69	- 중부	8.005	옥도면 선유도리	2019.04	철 재			
12	33009	126° 25' 13.93407"	Y	147634.72	<b>Φ</b> Τ	0.003	산26	.30	르세			
73	53670	35° 49' 11.93179"	Х	358224.55	중부	3.975	옥도면 선유도리	2019.04	철 재			
73	33070	126° 25' 18.33920"	Y	147745.31	<b>6</b> Т	0.975	459	.30	르세			
74	53671	35° 49' 13.57314"	Х	358276.29	중부	4.190	옥도면 선유도리	2019.04 .30	철 재			
74	33071	126° 25' 10.58667"	Y	147551.00	<b>Φ</b> Τ	31 1.100	459		걸세			
75	53672	35° 49' 13.82762"	Х	358284.70	조 ㅂ	4.379	4 379	4 379	중부 4.379	옥도면 선유도리	2019.04	철 재
73	33072	126° 25' 06.80620"	Y	147456.15	<b>6</b> Τ		459	.30	르세			
76	53673	35° 48' 06.83844"	Х	356221.01	- 중부	4.462	옥도면 무녀도리 127-1	2019.04	철 재			
70	33073	126° 25' 00.00053"	Y	147273.01	<b>Φ</b> Τ	4.402		.30	르세			
77	53674	35° 48' 15.27536"	Х	356480.04	- 중부	4.633	옥도면 무녀도리	2019.04	철 재			
	30074	126° 25' 06.69936"	Y	147442.75	6T	4.000	산129-1	.30	르세			
78	53675	35° 48′ 12.28357″	Х	356387.58	- 중부	3.504	옥도면 무녀도리	2019.04	철 재			
70	33073	126° 25' 08.37575"	Y	147484.30	<b>6</b> Т	3.304	136-3	.30	르세			
79	53676	35° 48′ 13.45311″	Х	356423.29	- 중부	8.350	옥도면 무녀도리	2019.04	철 재			
79	33070	126° 25' 10.64766"	Y	147541.55	<b>Φ</b> Τ	0.550	136-4	.30	르세			
80	53677	35° 48′ 14.24348″	Х	356447.18	- 중부	3.293	옥도면 무녀도리	2019.04	철 재			
	30077	126° 25' 13.82611"	Y	147621.50	<u></u> 6Т	0.230	226-1	.30	르세			
81	51216	35° 58′ 14.63877″	Х	374850.33	중부	3.841	산북동	2019.04	철 재			
01	31210	126° 39' 39.87685"	Υ	169430.10	5-	3.041	1505-1	.30	걸세			

※ 측량성과 보관 장소 : 군산시청 토지정보과(☎ 063-454-4332)

군산시 공고 제2019-1656호

## 공 고

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9. 9.

## 군 산 시 장

1.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: 2019. 9. 9.

2.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(2점)

구분	공인명	글씨・규격	인 영	재료	등록사유	관리부서
신	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관인	한글전서체 3.0*3.0		2019. 9.	옥외광고 발전기금 조례개정	건 축 경관과
圣	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출납원인	한글전서체 2.1*2.1		2019. 9.	소네개성 -	021